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9. 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30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7년 9월 3일 원안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7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7. 9. 5) 상정 · 수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 광 우)

- 가.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별정직 전문위원 6급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의회관련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등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구의회사무국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규정 신설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박 성 열)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 이 종 환 위원외의 수정안 동의

6. 修 正 案 의 要 旨

- 수정이유
 - 6급 상당 전문위원 임용자격 기준이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현행 별정직 5급 상당 전문위원 임용자격 기준보다 오히려 강화되어 있으므로, 5급 상당 전문위원의 임용자격을 형평에 맞게 상향조정 함.

○ 수정안 본문

별표1의 제7호 구의회전문위원 5급 상당 임용자격 란의 “2.”와 “3.”을 “3.”과 “4.”로 하고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인자”를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신설한다.

7.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관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의 제7호 구의회전문위원 5급 상당 임용자격 란의 “2.”와 “3.”을 “3.”과 “4.”로 하고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인자”를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신설한다.

수정안 대비표

[별표 1]

7.구의회 관련분야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현행	개정안	수정안
구 의 회 전문위원	5급 상당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	1.4년제 대학 졸업 자로서 <u>관련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 자</u> 2.6급이상 공무원 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u>관련분야 경력자</u>	1.(현행과 같음) <u><신설></u>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1. <u>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u> 2. <u>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u> 3.(현행 2.와 같음) 4.(현행 3.과 같음)
	6급 상당 <신설>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 <신설>	<신설>	1.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자 2.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일반직 7급, 별정직 7급 상당 또는 전임 계약직 다급 이상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4.7급 이상 공무원 으로 5년 이상인 자 5.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기준에 준한 다고 인정한 <u>관련 분야 경력자</u>	(개정안과 같음)